수 입 인 지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은행은 본인에게 이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
(주택도시기금대출 : 가계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20 년 월 일

1.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변경 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아래 약정내용을 확약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본인확인	직 위		성 명	

■ 기타 특약사항

본인	(서명 또는 인)

■ 대출금 수령계좌 지정 · 위임표시

금 액	금 원
대출금수령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위임자(채무자)	(서명 또는 인)
지급일자	
지급금액	금 원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개시일	년 월 일	대출기간만료일	년 월 일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5년단위	연 % 적용되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 될 경우 대출 개시일로부터 매5년마다 변동됩니다.
		기타	연 % 로 적용되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 될 경우 변동되며, 은행은 금리 인상시 고객님께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SMS, 이메일 등 한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통지해드립니다.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연 (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 ( )% 적용되며, 특례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금리는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 될 경우 변동되며, 은행은 금리 인상 시 고객님께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SMS, 이메일 등 한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통지해드립니다. ※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신생아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특례기간 적용기간 중 금리 연 ( )%에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저 기본금리와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 부과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는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될 경우 변동됩니다.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가장 작은 값이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별 하한 금리 값을 적용. *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연소득	하한금리
1.3억원 이하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억원 초과	대출접수일 기준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

		※ 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로 운용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정금리	연 % ※ 대출기간 10년 및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적용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연 % ※ 10년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 구입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 전세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본 약정서 상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5-16-0131(4-1) (2026.06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61 호(2026.06.15)

하나은행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선택 시 0.3%p,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2%p,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

구분	□ 구입자금	□ 전세자금
기준금리 적용기준	대출기간 ( )년 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 )원 임	임차보증금 ( )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 )원 임

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 연 4%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 연 4% ·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 연 5% · 다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단, 본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 다만, 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분할상환대출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이자는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월세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회차별 실행금액 중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실행금액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이자율 변경시 적용기준	이자율 변경시 변경기준일로부터 변경됩니다. 다만, 분할상환대출은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대출실행 방 법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기성고율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 하되, 대출금의 일정비율은 추가담보 취득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매 ( )개월마다 분할 실행합니다.

원리금의 상환방법	□ **분할상환** 원금은 대출개시일로 부터 (□ ( )개월 동안, □ 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이 기간 중의 이자는 매월( )일에 후지급하며, 할부금은 거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매월( )일에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으로 분할상환 합니다.
	□ **일시상환** 원금은 위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 ) 일에 후지급하되, 최종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혼합상환**(원리금 · 원금균등분할 + 일시상환) 금 원(대출금액의 연 %상당금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 하되 이자는 매월( )일에 후지급하고 최종 이자는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위 금액 이외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 익월 최초로 도래하는 대출개시일 해당일 (매월 일)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 원리금 균등 □ 원금 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월세금대출에 대한 일부 상환은 회차별 실행금액 단위별로만 가능합니다.
할부금의 상환방법	□ 원단위로 합니다.

제2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연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이자율, 지연배상금률의 변동 및 지연배상금

① **대출이자율, 지연배상금률, 대출기간, 호당대출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릅니다.**
②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제1조에서 정한 이자율 또는 지연배상금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이자 ·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기로 합니다.(단, 본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

제4조 대출금의 분할실행

①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대출실행내역표등의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분할실행일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최초 분할실행일을 기준으로 거치기간, 대출기간만료일 및 약정납입일을 정하기로 합니다.
③ 제1조의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분할실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행된 금액으로 대출금액을 확정하기로 합니다.
④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금융사정의 변동, 채권보전상 필요 있는 때에는,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대출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5-16-0131(4-2) (2026.06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61 호(2026.06.15)

하나은행

제5조 추가담보

① 본인이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대출받은 토지위에 건설하는 시설물, 건물 포함)은 건설도중이나 건설 완료후에도 은행의 승인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로 하며, 동 시설물과 건물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설정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시설물과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과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후취담보 취득 시 포함)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6조(담보의 제공)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

2.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을 위반한 때 또는 시정조치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3. 본인의 귀책사유로 승인 또는 허가받은 사업계획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

4. 해당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별장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또는 태양열 주택인 경우 기 설치한 난방 설비를 철거한 때

5.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등을 받은 후 선순위 채권 등으로 담보가 부족한 경우 그 초과 대출금 해당액

6. 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

가. 임차주택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퇴거한 경우

나.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를 초과한 경우

다. 목적물 변경 시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라.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입양아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해당 입양아를 파양하는 경우

8.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이하 "세대원")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9.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가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10. 제출한 자료가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11.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11억원(구입자금), 3.45억원(전월세자금)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

상기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	본인	(서명 또는 인)

제7조 무주택등에 대한 특약사항

①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세대 구성 예정자 포함),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이하 "미성년 형제·자매")(버팀목 대출 제외)의 무주택,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 단,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버팀목 대출 제외),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무주택,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본인 및 세대원(세대 구성 예정자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버팀목 대출 제외),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 생애최초 □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세대 구성 예정자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버팀목 대출 제외),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무주택 등 관련 특약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	
본 인	(서명 또는 인)

제8조 소유권이전 · 임차계약 해지시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①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시설물과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단, 수익 · 손익공유형 모기지 및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채무인수는 불가하나, 차주의 사망, 이혼으로 인한 차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허용합니다.

②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금리변경)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①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구입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11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0%p 가산, **5천만원 초과**인 경우 5.0%p 가산, **1억원 초과**인 경우 5.0%p 가산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 처리하기로 합니다.
2.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2.0%p 가산, **5천만원 초과**인 경우 4.0%p 가산, **1억원 초과**인 경우 4.0%p 가산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 처리하기로 합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환 포함)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④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익상실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금리변경) 적용과 가산금리(또는 금리변경)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기한이익상실, 우대금리 적용 제외 및 조건변경 제한과 최종 적격 확정시 금리 적용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	본인	(서명 또는 인)

제10조 기한연장 및 목적물 변경

① 오피스텔구입자금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를 상환하기로 하되 10% 상환이 불가한 경우 0.1%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전세자금(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대환 포함),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를 상환하기로 하되 10% 상환이 불가한 경우 0.2%(단, 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대출 담보 보증서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5-16-0131(4-3) (2026.06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61 호(2026.06.15)

하나은행

경우 1년 1개월) 이하인 경우 0.1%)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기한연장 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 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주거안정월세대출 기한연장시에는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기한연장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금액의 일반형 25%(우대형 10%)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1%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으로 금리우대를 받은 경우 기한연장 시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중 1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⑤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의 상환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율의 변경시에도 계속하여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환대출 기한연장 시 최초 취급된 대환대출금의 25% 이상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한연장 시 최초 취급된 대환대출금의 25%이상을 대출기간(단, 2회차 연장시부터는 직전 기한연장 기간) 중 상환한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⑦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우대금리 요건 충족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⑧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1. 본 대출 취급이후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
(단, 퇴거주택 소유자에 한함)
2. 퇴거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단, 퇴거주택 소유자에 한함)
3. 본 대출 취급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⑨ 대출목적물 변경 즉시 은행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대출금 수령위임

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서에 의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 중 위 대출금 수령계좌의 금액(부대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청구·수령할 일체의 권한을 위와 같이 위임하며 이에 따르는 법적분쟁 등이 있을 경우, 은행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자산기준 초과 시 대출계약의 철회

제9조에 따라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기본약관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①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 전액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기로 하며, 회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②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또는 본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③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됨이 확인되는 즉시 본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

- 고객 고지 사항 -

1. 제12조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사 표시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가능합니다.
2.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 약정서 제 6조 및 제7조, 제13조,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본약관 제4조의 3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인)	자필확인	

5-16-0131(4-4) (2026.06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61 호(2026.06.15)

하나은행